「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미시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4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환경교통국장 박 영 일**

2. **제안이유**

○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3년)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나)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다)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2) 필요성

가)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관리·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상시·지속적 사무로서, 직영 운영에 비해 민간 전문업체의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능률성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민간 위탁으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사업계획·목표달성도·서비스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1) 시 설 명: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2) 위　　치: 경북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구미하수처리장 내)

3) 처리용량: 95톤/일

4) 가 동 일: 2006. 1.부터

5) 처리방식: 전처리 후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6)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746.72		
지하1층	125.19	저장조	음폐수 저장조
지상1층	576	공장동	사료화 시설 운영
지상1층	45.53	사무실	사무실

라.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459백만원 ※ 산출근거: 2027년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름

(단위:백만원)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운영비	2,459	2,459	2,459	

바. 수탁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전문성, 기술력, 동종시설 운영실적 등 종합심사

3) 평가방법: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아. 성과평가 결과, 성과보고서 및 감사 결과(재위탁, 재계약): 적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62조

2)「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근 태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탁월' 등급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시설 운영을 위한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유지보수 계획 이행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처리비용의 적정성 및 악취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